

甲骨文으로 본 商代의 刑罰*

梁東淑**

◁ 목 차 ▷

- I. 緒論
 - II. 商代의 法律
 - III. 商代 法律의 特色
 - IV. 商代 法律의 內容
 - V. 刑罰의 種類
 - VI. 刑罰의 執行
 - VII. 結論
-

I. 緒論

商代는 갑골문의 발견과 기타 유물들의 출토로 인해 존재가 확인된 중국 최초의 국가이다. 商王室의 정치적 중대 목표는 '祀와 戎' 즉, 전쟁과 제사에 있었다. 전쟁의 무력 행위는 물론 商代 敵國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고, 귀신에게 부단히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가를 영속시키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에 강한 法律이론이 존재했다. 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근거가 되는 규범으로 사회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당위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강제 조치 내지 制裁가 행하여진다.

법에 있어서의 制裁는 법 규범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制裁는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04년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체제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 수단이 다양해졌다. 商代에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 백년에 걸친 이 같은 정치적 행위와 징벌의 양상은 도형으로 형성화되어 소위 刑罰관련 문자들이 만들어졌다.

商代는 수많은 諸侯國과 方國을 거느렸던 고대국가였다. 商王이 기거하는 王畿를 중심으로 8百萬에 달하는 인구에 호시탐탐 전복을 노리던 不族들(異族)에 둘러 쌓여있었다. 강력한 法律의 제정과 준엄한 법의 집행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1899년 갑골문 발견으로 商代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상이 드러났다. 적지 않은 卜辭에는 商代의 여러 가지 刑罰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갑골문자의 자형에 근거하여 商代 통치 계급이 백성들에게 행한 유린과 살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밝혀 낼 수가 있다.

商代에 형벌관련 문자가 많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천여 년 간 전해 내려 온 신석기시대 끝자락에서 5백여 년 동안 지속한 夏왕조를 무찔렀고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盤庚은 천도를 강행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법규는 까다로워지고, 행위자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징벌을 받아야했다. 노예사회였던 商代에 他族의 노예뿐 아니라 本族의 죄인들에 대한 형벌도 강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 商代에 어떤 형벌들이 있었고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卜辭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당시 商왕실은 왕조 정권유지와 사회 발전, 군소 방국들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 강하게 선포했던 法律과 이에 反한 者들에 대한 刑罰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실제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商代 甲骨文에 나타난 刑罰에 관한 고찰로 殷墟에서 발견된 甲骨文을 근거로 하고, 기존의 문헌들을 방증 자료로 이용하였다.

1) 裘錫圭 〈甲骨文中所見的商代五刑〉《古文字論集》，北京，中華書局，1992. 211쪽

II. 商代의 法律

法律은 정권을 장악한 통치계급이 통치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만든 정치제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商代는 건국 이래 통치권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많은 법령을 제정했다. 商代의 法律제도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는 우선 문헌의 기록으로 알 수 있고 甲骨文이 발견된 후 문헌의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형벌과 관련된 문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刑의 유래는 매우 장구한 역사가 있다. 《左傳·昭公》〈六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夏有亂政，而作禹刑，商有亂政，而作湯刑，周有亂政，而作九刑。(夏代에는 政令을 어긴 자가 많아 禹刑을 제정했고, 商代에는 政令을 어긴 자가 많아 개국의 祖인 湯은 형법을 제정하였으며 周代는 政令을 어긴 자가 많아 九刑을 제정했다.)

위 예문에서 보면 형벌이 夏代에서부터 제정되어 商代를 거쳐 周代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白虎通》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²⁾

三王始獄，夏曰夏臺，商曰圜里，周曰囹圄，皆圜地。(3대에는 감옥이 있었다. 하대에는 夏臺라 하였고 상에서는 圜里라고 하였으며 주에서는 囹圄라 하였는데, 모두 감옥을 말한다.)

《周禮·大司徒》의 鄭玄註에는 「圜土謂獄也」라고 한 것을 보면 夏代로부터 刑과 감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夏代 刑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³⁾ 商代의 刑罰을 湯刑이라고 한 것은 成湯에 의해 제정되고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史記·殷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⁴⁾

2) 嚴一萍 〈殷商刑法志〉, 《中國文字》, 新五期, 再引用, 藝文出版社, 1981, 59쪽

3) 《尚書·大傳》에 「夏刑三千」, 《法言·先知》에는 「夏后肉刑三千」이라 하였으며 《周禮·秋官·司刑》鄭註에는 「夏刑大辟二百, 臠辟三百, 宮辟, 劓, 墨名千」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夏代의 국가 법률 조항이 三千에 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4) 司馬遷 《史記》, 〈殷本紀〉, 廣文書局, 1962, 62쪽. 《尚書·湯誓》, 〈十三經註疏〉, 藝文書局, 1970, 116쪽.

帝太甲既立三年，不明暴虐，不遵湯法，亂德，於是伊尹放之於桐宮。(太甲이 재위에 오르지 3년이 돼도 포악성이 그치지 않고, 湯法을 준수하지 않으며 군으로서의 덕을 어지럽힘에 伊尹은 그를 桐宮에 유배시켰다.)

여기서의 湯法은 바로 湯刑인 것이다. 湯刑은 周代로 오면서 九刑이 되었고 점차 후세 治國之本이 되었다.⁵⁾ 《尚書·盤庚上》에는 法度라는 말이 있다.

盤庚學于民，由乃在位以常舊服，正法度。(반경은 백성을 깨우치시되 관직에 있는 자부터 시작하여 옛 법규를 숭상하고 법도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法度는 法律制度를 말한다. 盤庚이 말한 法度는 곧 湯이 제정한 法律制度, 즉 '湯刑'인 것이다. 그렇다면 商代의 湯刑의 규모는 어떠한가. 《呂氏春秋·孝行覽》에는 처음으로 湯法의 규모를 언급했다.⁶⁾

《商書》曰：刑三百，罪莫重於不孝。(상서에 이르기를 형이 3백 조항이 있으니 불효보다 중한 죄는 없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보면 商代의 법률 규모는 조항이 3백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법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문헌의 기록을 살펴볼 때 商代의 형벌은 刑·法·法度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고 三百에 달한 법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湯法이 쇠퇴해지자 祖甲에 이르러 이를 정리했다. 《竹書紀年》에 근거하면 祖甲은 湯法을 재정비했다.⁷⁾

祖甲二十四年 重作湯刑。(祖甲 24년 湯刑을 재정비하였다.)

祖甲은 商代후기를 이끌었던 武丁의 아들이자 湯이후 3백여 년이 지난 뒤

5) 楊升南 〈商代的法律〉, 《甲骨文獻集成》, 25冊, 2001, 四川大學出版社, 北京.

6) 張雙棣編 《呂氏春秋釋註》, 吉林文化出版社, 1987, 380쪽

7) 《竹書紀年》, 〈沈約注曰:「繁刑法携遠, 殷道復衰, 雷學淇曰:湯刑, 僅三百而已, 甲以爲輕而增之。」嚴一萍 〈殷商刑法志〉, 《中國文字》, 新五期, 1981, 62쪽

였다. 祖甲은 殷道가 기울어 헤이해지므로 형벌을 재정비한 것이다.

帝辛시대에 와서 辟刑을 증진하고 炮烙之刑이 추가된다.⁸⁾ 帝辛은 상대의 마지막 王으로 商末을 이끌었던 제왕이었다. 이 때 더욱 엄한 형벌을 제정하여 포로나 노예들을 탄압했음을 알 수 있다. 《荀子·正名》에서는 中國의 형벌에 관한 기초가 商代에 공고히 되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다.⁹⁾

刑名從商。(형벌의 명칭은 상에서 비롯했다.)

이 같은 기록을 종합해보면 商代는 여러 왕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立法활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벌의 단죄와 집행이 확고하게 이루어졌고 형벌에 대한 명칭 역시 상대에 분명하게 명명되는데 이는 甲骨文字로도 증명되고 있다.

法律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夏代는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로 진입하였고 商은 이를 계승 발전하여 노예사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으며 周代로 이어갔다. 확실한 노예제 사회였던 商周시대에는 강력한 法律로 통치권을 옹호하고 刑罰로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尙書·呂刑》에 의하면 周代에는 五刑 즉, 墨·劓·剕·宮·大 등 다섯 가지 형벌이 있었고, 《周禮·秋官·司刑》에 의하면 墨·劓·剕·宮·殺이 五刑이다.¹⁰⁾

上記 《左傳》에는 九刑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刑名은 없고 《尙書》와 《周禮》에는 五刑의 刑名이 기록되어있다. 墨은黥으로 이마에 문신하고 먹물을 칠하는 형벌이고, 劓는 코를 자르는 형벌이며, 剕는 刑로 다리를 자르는 형벌이고, 宮은 성기를 자르는 형벌, 大는 殺, 즉 死刑이다. 갑골문에는 머리를 자르는 모양인 伐이 있는데 이는 大에 해당한다.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갑골문에 이들 다섯 가지의 형벌이 모두 나타난다. 周代는 商代의 제반 제도들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8) 《史記·殷本紀》: 「於是紂乃重辟刑, 有炮烙之刑」

9) 梁啓雄 注, 《荀子》, 〈正名〉, 商務印書館, 1968.

10) 《尙書·呂刑》, 《十三經註疏》, 藝文出版社, 300쪽

Ⅲ. 商代 法律의 特色

商代는 중국 五千年 歷史上 가장 미신적인 왕조였다. 商代 帝王들은 '尊神'을 통치상의 최상의 이념으로 삼음으로서 王權과 結合을 이루었다. 갑골복사에는 商代의 정치·경제·사회적 각 방면의 현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法律에 관한 내용 역시 예외가 아니다. 卜辭는 상왕의 占卜내용으로 비록 역사 기록은 아닐지라도 商王들의 통치 행위가 잘 반영되어 있다. 卜辭에 나타난 상왕들의 斷罪는 神에 의해서 단행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¹¹⁾ 商代의 甲骨卜辭 중 斷罪 할 수 있는 神으로는 帝, 즉 上帝·祖上神·自然神·大臣神등이 있다.

1. 上帝神

商代人들의 관념 중 上帝는 절대 권능의 神으로 인간의 生死禍福을 주관한다고 믿었고, 천재지변이나 곡물의 수확, 왕이 겪는 재앙까지도 上帝의 관장 사항으로 여겼다. 甲骨卜辭중의 帝의 권한은 매우 다양하다.

- [1] 壬申卜, 古貞 : 帝令雨。(《合》 14129 正)
 壬申일에古가 묻습니다 : 상제는 비를 내릴까요?
 [2] 貞 : 帝受我祐。(《合》 14488)
 묻습니다 : 상제는 우리 상에게 도움을 줄까요?
 [3] 貞 : 帝其作王圻。(《合》 14182)
 묻습니다 : 상제는 왕에게 재앙을 줄까요?

2. 自然神

商王들은 자연을 신격화하였기 때문에 숭배 대상으로 삼은 많은 자연신들이 있다.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 상왕실과 상왕의 안녕을 기원했다. 자연신도 왕실을 도울 수 있고 왕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승

11) 楊升南〈商代的法律〉, 《甲骨文獻集成》, 25冊, 2001, 四川大學出版社, 北京.

배한 자연신에는 河神·水神·山神·土神·雲神·風神등이 있다.

- [4] 壬寅卜, 貞 : 河它(ㄱ)王。(《合》 7762)
壬寅일에 묻습니다 : 황하신은 왕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 [5] 庚戌卜, 爭貞 : 岳不我它。(《合》 14488)
산신은 우리 商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요?
- [6] 勿侑于風。(《合》 13368)
바람신에게 侑祭를 드리지 말까요?
- [7] 其燎于雲, 轟大雨。(《金璋》 189)
구름 신에게 제물을 태워 제사 드리면, 큰비를 만나지 않을까요?

3. 祖上神

상왕들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예우가 극진했다. 상왕실은 멀고 가까운 조상들의 계보의 체계를 세우고 그 서열에 따라 정중하게 제사를 지냈다.¹²⁾ 이들 조상들은 상제와 같이 제사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상신도 자신들의 생사회복을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8] 貞 : 于王亥求年。(《合》 10105)
묻습니다 : 王亥에게 풍성한 수확을 기원할까요?
- [9] 貞 : 上甲它王。(《合》 939 反)
묻습니다 : 상갑은 왕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 [10] 貞 : 侑白畿于妣癸, 不左。(《合》 2496)
묻습니다 : 妣癸에게 흰 돼지를 올려 제사 지내면 재앙을 받지 않을까요?

4. 大臣神

商王室의 여러 왕들에게는 뛰어난 지략과 덕망으로 왕을 도왔던 훌륭한 대신들이 있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름이 전해진 신하로는 伊尹·大戊·巫成을 비롯해 16명에 이른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伊尹으로 商왕을 도왔던 大臣인데 죽은 뒤에는 神으로 모셔졌다.¹³⁾ 상왕들은 이들이 商왕에게 재앙을 미쳤

12) 《甲骨文合集》, 32384片, 董作賓, 《甲骨學六十年》, 1965, 72쪽

는지를 묻는 卜辭도 볼 수 있고 이들을 先公先王과 함께 제사 지내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다.

- [11] 癸口卜：上甲歲，伊賓。(《合》 27057)
 상갑에게 歲祭를 드리고 伊尹에게 寶祭를 드릴까요?
 [12] 乙巳，貞：其求禾于伊。(《合》 33282)
 문습니다：伊尹에게 풍성한 수확을 기원할까요?

IV. 商代 法律의 內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商代에는 三百종류의 刑法이 있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尚書》，《韓非子》에서 商代 刑法 중의 몇 가지 단죄 조항만을 찾아볼 수 있다.

1. 誓言을 따르지 않은 경우(不從誓言)

《尚書·湯誓》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⁴⁾

爾不從誓言，予則孥戮汝，罔有攸赦。(그대들이 나의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대들을 처자와 함께 죽일 것이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대 개국의 祖였던 成湯이 商代의 모든 군대에 선포한 대 훈화였다. 「湯誓」는 바로 國王이 군대에 선포한 法律이며, 또 이는 당시의 法律을 근거로 한 추상같이 엄한 훈계이다. 湯은 夏의 桀王과 싸우기 위해 강하게 군대를 훈련했고 엄한 훈시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사형과 같이 단호한 조치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誓言은 군인이 나라에 맹세하는 선서를 말하는데 商王의 誓誥는 法律의 근거가 되어 이를 어긴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때로는 사형에 처해지고, 때

13) 陳夢家 《殷墟卜辭綜述》，科學出版社，1956，362쪽

14) 屈萬里 《尚書·湯誓》，《尚書釋義》，160쪽

로는 노예로 강등했다. 이는 바로 ‘朕即國家’, 왕의 말이 바로 국가의 법으로 왕이 法律의 한 가운데 있는 君主專制度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2. 왕명에 불복종하는 경우(顛越不恭)

《尚書·盤庚》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⁶⁾

乃有不吉不迪，顛越不恭，誓遇姦女究，我乃劓殄滅之，無遺育。(선량하게 살아가지 않고 행악하며 왕명을 거역한 경우 죽이고 후사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아 후환을 없앴다.)

不吉不迪는 선량하지 않고 화목을 깨는 자들이며 顛越不恭은 규범을 어기며 공경하지 않은 자들이다. 즉 국왕의 명령을 공경하게 따르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盤庚은 깨끗하게 소탕해 후환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無遺育’이다.

3. 유언비어로 대중을 현혹시킨 경우(謠言惑衆)

《尚書·盤庚》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⁷⁾

胥動以浮言，恐沈于衆。(근거 없는 말로 선동하여 동요를 조성하는가, 그러다가는 변변치 못한 사람 속에 빠져 화를 입게 될 것이다.)

盤庚은 殷으로 천도를 단행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급기야 천도를 위해 민중을 향해 호소하지만 소란이 이어지자 그는 유언비어를 조장하는 사람을 엄하게 징벌하고 심지어 사형도 불사하였다. 盤庚은 천도를 반대하는 사람과

15) 〈湯誓〉에는 상왕을 도우면 상을 내리고,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 처자와 함께 죽이겠다는 사상이 충만한 것으로 보아 작성시기가 전국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尚書·商書·湯誓》 李家源, 弘新出版社, 1992, 143쪽)

16) 《尚書·盤庚》, 205쪽

17) 《尚書·盤庚》, 193쪽

유언비어를 조장해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고 천도를 순조롭게 단행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언비어로 대중을 현혹한 사람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불효하는 행동을 한 경우(不孝之行)

《尚書·伊訓》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⁸⁾

始于家帮，终于四海。(가정이나 나라로부터 시작해 천하로 펼쳐나가 마친다.)

효는 종법제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덕목이다. 上記 예문은 마치 修身·齊家·平天下에 이르는 과정과 일맥 상통하는 유가적인 가르침이 스며있다. 孝는 내부적으로는 父母에 대한 효를 말하나 기실은 왕에 대한 충성으로 宗法制度를 옹호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不孝를 가장 큰 죄로 보았다. 갑골문의 孝(𠄎)자는 노인이 손으로 아이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老와 子자를 합친 자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이 노인(叀)인데 아이가 부축하고 있는 모양으로 공경하게 노인을 섬김을 표현한 자이다. 물론 부모에게 효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孝라는 뜻에 老는 의미와 음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다. 商代 갑골문에 孝자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당시에 孝사상이 움뻐음을 반영한다.¹⁹⁾ 商代는 이미 宗法制度가 확립되어 조상을 공경하고 적장자 상속을 하여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법까지도 마련되었다.²⁰⁾

商代에 孝行을 중시하였음은 통치계급의 내부 모순을 조정하고 통치권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湯刑 三百 조항 중 가장 중한 죄는 '不孝'가 될 만큼 孝를 중시했는데 불효한 사람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²¹⁾

18) 屈萬里 《尚書釋義》, 〈偽古文尚書〉, 華岡出版社, 1968, 177쪽

19) 谷衍奎 《漢文源流字典》, 華夏出版社, 2003, 246쪽

20) 許進雄 《殷卜辭中五種祭祀的研究》, 精華印書館, 1968, 27쪽

21) 楊升南 〈商代的法律〉, 55쪽

5. 임금의 비리를 간언하지 않은 경우(臣下不匡)

《尙書·伊訓》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²²⁾

臣不匡，其刑墨。(신하로서 상관의 비리를 간언하지 않으면 墨刑에 처한다.)

신하로서 임금의 三風十愆의 비리를 간언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죄 값을 치렀다. 三風이란 巫風·淫風·亂風이고 十愆은 노래나 춤을 일삼고 재물을 탐내며 색에 빠지고 오락을 즐기며 사냥을 과도하게 하며 성인을 경시하고 충직하지 않은 사람을 권고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비열한 무리를 奸으로 비유한 경우이다. 이들은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간언하지 않은 경우가 '臣下不匡'의 罪로 얼굴에 문신을 당하는 형에 해당하는데 湯刑중에서는 宮刑에 해당한다. 《尙書》중 <伊訓>은 僞作으로 보지만 '巫風'이라는 기록이 있어 <湯刑>의 내용에 근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²³⁾

6. 공공도덕을 파괴하는 경우(棄灰于公道)

《韓非子·內儲說上》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²⁴⁾

殷之法，棄灰于公道者，斷其手。(은대의 법에서는 공공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손을 잘랐다)

公道를 지키지 않음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공공도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가령 큰 길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큰 죄는 못된다. 그러나 손을 자르는 형벌은 重刑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子貢은 孔子에게 이 법에 대해 물었을 때 孔子는 '이는 治國의 도리(此治道也)'라고 칭

22) 屈萬里 <伊訓>, 《尙書釋義》, 177쪽

23) 屈萬里 《尙書釋義》, 上同.

24) 傅武光 註釋 <韓非子>, <內儲說上>, 三民書局, 1997.

송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사실상 泰孝公이 商 殃變法을 쓴 것은 孔子 사후 120년이 지난 뒤였으나 《史記·李斯傳》에서 商殃이 '灰於道者'에게 형을 가한 것은 殷法을 따른 것이라고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자체는 경미한 죄과이나 이로 인해 더 큰 죄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중형을 부과한다는 지극히 관료적이고 계급적인 입장을 대변한다. 노예사회의 잔혹성을 반영하는 조항이다.

이상 6가지 法律들은 三百條項에 달했던 湯刑중 문헌에 남겨진 편린들이다. 周公이 殷代遺民에게 했던 《尚書·多士》중의 「惟殷先民有冊有典」을 근거하면 商代에 분명 典籍이 있었다²⁶⁾ 상대에 가장 중시되던 서책이라면 法典, 즉 〈湯刑〉으로 추정되며, 三百條項이었다는 것은 法典이 매우 방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上記 6 항목을 볼 때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군사적·정치적·사회적·인륜적인 항목이 섞여있고, 成湯시대에 법이 제정되어 盤庚시대에 강하게 쓰였고 祖甲은 重建하였으나 帝辛에 와서 더욱 잔인한 형벌들이 추가된다. 당시 3백여 항목의 법조항들이 있었다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소실되고 단지 몇 몇의 고문헌에 남겨졌을 뿐이다.

V. 刑罰의 種類

商代의 刑罰이 단호하고 잔혹했음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문헌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형벌의 실상이 甲骨文 발견이후 갑골문 刑罰卜辭나 軍隊·監獄관련卜辭에서 문자로 증명되고 있다. 商代에 인명을 빼앗는 행위에는 「人牲」과 「人殉」이 있었다. 人牲은 사람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것이고 人殉은 왕이나 왕실 귀족이 죽으면 함께 묻는 순장을 말한다.

상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는 주로 人牲으로 사용했고 노

25) 嚴一萍 〈殷商刑法志〉, 《中國文字》 新五期, 1981, 75쪽

26) 갑골문 冊자는 대나무를 글을 쓸 수 있게 다듬어 엮은 모양이며 典자는 손으로 冊을 받쳐든 모양이다. 자형은 점차 받침대를 뜻하는 几로 바뀌어 당시의 실생활을 반영했다. 상대의 法典인 〈湯刑〉을 중히 소장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예들은 人殉시켰다. 포로와 노예는 사뭇 다른 두 종류의 계층이었으나 피압박자로 있었다는 공통적인 성격을 띤다. 姚孝遂는 형벌에 처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들이었다고 보고 있다.²⁷⁾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商代 刑罰을 분류해보면 크게 死刑·內刑·徒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⁸⁾

1. 死刑

사형은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로 최고형에 속한다. 사형에 속하는 형벌로는 伐刑·卯刑·火刑·凌遲·生理葬·水沒·醢刑등이 있다.

1) 伐刑(大劈)

머리를 자르는 형벌이다. 갑골문 중 '伐'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많다. 伐은 도끼나 칼로 목을 치는 卩 모양으로 그 행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金文에 보면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모양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도 1)²⁹⁾



(도 1) 《金文編》 831



(도 2) 《合》 6017 正

전쟁이나 제사복사를 비롯해 형벌복사에 많이 쓰였는데 제사 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올릴 때 목을 쳐 드리는 제사는 伐祭이고 전쟁에서는 적군의 목을 쳐 처형한 것이 伐刑이다. 도끼로 목을 치는 모양에는 卩가 있다.(도 2)

27) 姚孝遂 〈商代的俘虜〉, 《古文字研究》, 제1집, 1979, 368쪽

28) 楊升南 〈商代的法律〉, 《甲骨文獻集成》, 25冊, 54쪽

29) 容庚 《金文編》, 1971, 831쪽

- [13] 侑于太甲，伐人十又五。(《合》 902正)
 太甲에게 侑祭를 드리는데 15사람을 목갈라 드릴까요?
 [14] 貞：王饗多屯。(《合集》 810反)
 문습니다: 왕은 多屯들의 목을 쳐도 될까요.

2) 卯刑(칼로 자르는 형벌)

卯는 제사에 제수품으로 올릴 때 사람이나 동물을 칼로 잘라 드리는 방법이다. 卯는 劉의 本字로 보는데 《爾雅·釋詁》에서는 「劉, 殺也」라고 하였다. 형벌로 쓰일 때는 칼로 사람을 자르는 처형이다. 比干이 자신의 심장을 잘랐던 고사의 유래가 이를 반영한다. 심장을 가르는 형벌로 甲骨文에서는 卯로 나타난다. 소나 양 등 동물에 행했지만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행해졌다.

- [15] 貞：其卯羌伊賓。(《粹》 151)
 羌인을 잘라 伊尹에게 賓祭를 드릴까요?
 [16] 貞：九伐卯九牛。(《合》 921)
 아홉 사람의 목을 치고, 소 아홉 마리를 잘라드릴까요?

3) 火刑(炮烙)

火刑은 불에 태우는 형벌이다. 火刑의 문헌에서의 명칭은 '炮烙之法' 이다.³⁰⁾ 상대에 심한 가뭇이 들면 사람을 불에 태워 제사지내는 관습이 있었다. 제수품으로 드리는 사람이나, 동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燎祭라고 하였다. 燎자는 불 위에 사람을 태우는 모양이다. 갑골문 燎자에는 𤇀, 𤇁, 𤇂 등 다양한 자형이 있다. 가뭇에 사람을 태워 제사할 때는 주로 포로로 잡아온 여성들을 희생시켰다. 여성포로로는 女, 𤇃 등이 있다. 여성노예를 태웠기 때문에 女자가 들어간 모양도 있다.³¹⁾ 裘錫圭는 𤇃자는 從黃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𤇃자를 잘못된 풀이로 간주하고 있으며, 黃은 상체가 유난히 큰 지체장애인 굼추의 모양이며 文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³²⁾

30) 王宇信 《甲骨文一百年》, 1999, 484쪽

31) 姚孝遂 《商代的俘虜》, 373쪽. 陳夢家는 《卜辭綜述》에서 女, 𤇃 등이 女巫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후세의 「焚巫」 관습을 근거로 한 것이고 상대의 巫의 지위는 매우 높아 제사의 희생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姚孝遂는 보고 있다.

- [17] 己丑卜, 貞 : 燎白人。(《合》 1039)
백인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릴까요?
[18] 燎出(有)雨。(《合》 1121正)
제물을 태워 제사 하면 비가 올까요?

4) 凌遲(磔刑)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사지를 가르는 형벌이 있다. 갑골문 它·它·它·它(磔)가 이에 해당된다. 于省吾는 《說文》중의 也(施로 읽음)라고 하였다.³³⁾

- [19] 勿它羌百。13月(《鐵》 176.1)
강인 백 사람을 갈라 죽이지 말까요?
[20] 它(磔)羌。(《合》 465)
강인을 사지를 갈라 죽일까요?
[21] 它(磔)十人又五。(《合》 27020)
열다섯 사람을 갈라 죽일까요?

羌人은 商代의 최대 적국이었다. 전쟁이 잦았고 잡아온 포로도 많아 감옥에는 羌人들의 폭동은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중 폭동으로 인해 죽게된 羌人의 기록을 볼 수 있다.

- [22] □自…(王)固曰 : 其有來媿…□圉羌戎。
(上海博物館 所藏, 骨 反)
[23] □□卜, 它貞 : 旬亡禍。(王固曰) : 有崇, …
□圉羌戎, 它圉一人。(北京大學 所藏 反)
它가 묻습니다 : 열흘 동안 재앙이 없습니까? 왕이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 : 재앙이 있겠다. 羌人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한 사람을 它刑에 처했다.

예문 [19]의 경우 羌人 일백 명이 죽임을 당한 경우를 볼 수 있다. [22], [23]의 경우 圉자 앞은 지명이 오게 되므로 '□圉'는 어느 곳의 감옥을 뜻한 것이다. 이로 보면 당시에 도처에 감옥이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³⁴⁾

32) 裘錫圭《說卜辭以焚巫尪與作土龍》《古文字論集》, 216쪽

33) 于省吾《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169쪽

5) 生埋葬

갑골문 祭祀卜辭에는 수많은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수품을 올리는데 적군의 포로나 노예들을 각종 방법으로 희생시켜 지냈다. 그 중 한 가지는 생매장하는 경우이다. 희생시키는 방법이 곧 제사명이고 또 형벌의 일종이기도 하다.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현상이 형상화 된 문자로는 𠄎, 즉 陷자가 있다.

갑골문에는 𠄎·𠄎·𠄎·𠄎 등 여러 자형으로 그려졌다. 이들 자형은 남성 또는 여성을 옹덩이에 넣는 모양이고 마지막 자형은 옹덩이에 사람을 밀어 넣고 철구공이로 철구질하는 형상이다.³⁵⁾ 殷墟에서 발굴된 수많은 귀족 묘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장되어 있다. 1976년에 발견된 婦好墓에도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장되었다.³⁶⁾

[24] 甲辰至戊陷人。(《後》下.16)

甲辰에서 戊일까지에 사람들을 생매장할까요?

[25] 丙申卜, 王貞: 勿善陷于門, 用。12月(《遺》34)

왕이 묻습니다: 문에서 사람을 생매장하지 말까요? 달리 쓸까요? 12월에

《說文》에는 「陷는 작은 구멍이다. 사람이 陷 위에 있는 것을 따른다. 陷 小阱也, 從人在白上」이라고 하였다. 小篆에서 '白'라고 한 것은 구덩이를 뜻한 '冂'에서 변화된 것이다.

6) 水沒(물에 빠뜨리는 형벌)

제사 복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수품을 물에 빠뜨려 지내는 방법도 있다. 갑골문 沈자는 물에 소를 빠뜨려서 제사 지내는 모양을 상형화 한 것이다. 沈자는 제사의 방법인 동시에 제사명이며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형벌이기도 하다. 튀어 오른 물은 점으로 표시했다.

34) 齊文心〈殷代的奴隸監獄與奴隸暴動〉, 《甲骨文獻集成》, 25冊, 368쪽

35) 徐中舒《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1990, 794쪽

36) 中國社會科學院《殷墟婦好墓》, 文物出版社, 1980, 8쪽

[26] 丁巳卜：其燎于河牢，沈妾。(《合》 32161)

丁巳에 점칩니다：소를 태워 河에 燎祭를 드리고, 여성 노예를 물에 빠뜨려 지낼까요?

일반적으로 沈자는 소나 양을 물에 빠뜨리는 𠄎·𠄏·𠄐 모양이지만 위 예문에서는 여인을 물에 빠뜨려 제사지냈다. 실제로 《合》27286편의 沈자는 사람(大)을 물에 넣는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이로 보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지내는 제사나 형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7) 醢刑

醢刑은 죄인들을 죽여 다져서 짓을 담은 잔악무도한 형벌이다.³⁷⁾ 《史記》나 《呂氏春秋·行論》에는 사람들 죽여 짓을 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⁸⁾ 갑골문 𠄎자가 있는데 于省吾는 𠄎라하고 문헌 중의 𠄎자, 𠄎의 본자라고 하였다.³⁹⁾ 𠄎는 《廣雅·釋詁》에서 「裂也」라고 하였는데 현대방언으로 𠄎음은 '가늘게 썰어 다진다'는 뜻이다.⁴⁰⁾

[27] 𠄎羌。(《合》 26956)

강인을 짓 담는 형을 내릴까요?

[28] 𠄎人。(《合》 35361)

사람을 짓 담는 형을 내릴까요?

2. 肉刑(體刑)

肉刑은 신체의 일부를 상해하는 형벌이다. 다리·손·코 또는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 내거나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 이에 속한다.

37) 王宇信 《甲骨學一百年》，1999, 484쪽

38) 《史記·殷本紀》：「九侯有好人，入之紂，九侯女不喜淫，紂怒而醢九侯，醜侯爭之疆，辨之疾，并脯鄂侯。」《呂氏春秋·行論》：「昔紂無道，殺梅伯而醢之，殺鬼侯而脯之。」高注：「肉醬爲醢，肉熟爲脯。」

39) 于省吾 〈釋妾〉《甲骨文字釋林》，中華書局，1979, 214쪽

40) 王宇信 《甲骨學一百年》，484쪽

1) 刑刑

월형은 다리를 자르는 형벌이다. 갑골문 刑자는 𠄎·𠄎로 손에 톱을 들고 다리를 자르는 형상이다.⁴¹⁾

- [29] 貞：其刑百人，死。(《合》 1043)
 묻습니다：100명에게 刑刑을 가하면 죽을까요?
- [30] 貞：刑仆八十人，不死。(《合》 580正)
 80명에게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내리면 죽지 않을까요?
- [31] 爭貞：刑往，不死。(《合》 861)
 도망간 죄인을 잡아와 刑刑을 가하면 죽지 않을까요?

다리를 자르는 형벌은 龍山文化시기에 이미 자행되었던 것이다. 龍山文化 시기의 墓葬중에서도 다리 잘린 유골이 발견되어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殷墟 商代遺址중의 祭祀墓內의 순장인증에는 머리가 잘린 사람,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무수히 많았다.⁴³⁾ 刑刑은 劓刑보다 더욱 빈번하게 자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도 3)



(도 3) 《合》 6001 正



(도 4) 《合》 5998

2) 宮刑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로 宗族유지를 존중했던 고대인에게는 매우 잔혹한 형벌이다. 甲骨文에 남성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且(祖)곁에 刀을 붙여 나타냈다.(도 4)

周代에 이르러서는 剝로 쓰다가 점차 劓로 바뀌었다.⁴⁴⁾

41) 胡厚宣〈殷代的刑刑〉《考古》，1973. 2. 108쪽
 42) 洛陽博物館〈洛陽姪李遺址試掘簡報〉《考古》1978. 1기. 5-17쪽
 43) 中國社會科學院《殷墟的發現與研究》科學出版社，2001, 116쪽
 44) 裘錫圭〈甲骨文所見的商代五刑〉《古文字論集》，1992. 212쪽

- [32] 寅, 貞 : 剕(剕)。 (《合》 5996)
 寅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궁형을 내릴까요?
 [33] 庚辰卜, 王 : 朕剕(剕)光, 不死。 (《合》 525)
 왕이 묻습니다 : 왕인 내가 光人에게 宮刑을 내리면 죽지 않을까요.

3) 剕刑(코를 베는 형벌)

剕刑은 코를 자르는 형벌이다. 갑골문에서는 코를 베는 형상인 削자가 있어 剕刑의 실상을 보여준다.

- [34] 貞 : 呼剕, [若]。 (《合》 3297)
 묻습니다 : 剕刑을 명하는데 순조로울까요?
 [35] 貞 : 呼鼻, 不若。 (《合》 5995正)
 묻습니다 : 剕刑을 명하는데 순조롭지 않을까요?
 [36] …(脩)…剕…。 (《合》 5994)
 脩祭를 드리고…剕刑을 내릴까요?

脩는 제사명이다. 비록 잘린 복사이나 이는 脩祭를 지낸 후 剕刑을 단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劓刑(귀를 베는 형벌)

周代 五刑에 귀베는 형벌인 劓刑이 없으나 《尙書·康誥》에는 귀를 베는 형벌이 있다.⁴⁵⁾ 갑골문에는 많지는 않으나 從戈從耳의 문자가 있는데 于省 冫는 귀 베는 형벌로 보고 있다.⁴⁶⁾ 갑골문과 동시대에 사용했던 商代의 金文에는 甲骨文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다.(도 5)⁴⁷⁾



《商周金文錄遺》 320

45) 《尙書·康誥》: 「非汝封又曰劓刑人, 無或劓刑人。」
 46)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釋賤》, 中華書局, 1979, 291쪽
 47) 于省吾 《商周金文錄遺》, 科學出版社, 1956, 제319편, 제320편.

[37] 貞 : …人呼戠伐羌。(《合》6619)

戠에게 명해 강인을 처형할까요?

본 복사에서 戠은 인명으로 쓰였으나 그 사람은 귀를 잘린 형벌을 받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⁸⁾

5) 墨刑

죄인의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다. 일명 黥刑이라고도 한다. 형구의 침에 먹물을 넣어 문신부위를 표출시키므로 墨刑이라 칭해졌다. 이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처벌 중 가장 경미한 상태지만 범죄자가 한계를 넘어설 경우 신체를 상해하는 중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와 관용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⁴⁹⁾ 五刑 중 墨刑만이 생명을 앗아가는 형이 아니다.

[38] 丙寅卜, 王 : 尙火戈辛。(《合》20245)

왕이 묻습니다 : 火와 戈에게 명해 문신을 할까요?

[39] 貞 : 又目畢辛。(《合》6450)

차로 하여금 畢이 문신하는 것을 감독하게 할까요?

갑골문에는 문신과 관련된 많은 문자가 있다.

𠄎(辛) : 갑골문 辛은 문신을 새기는 칼의 모양이다. 갑골문중에서 辛이 들어가는 字는 거의 刑罰과 관계가 있다.

𠄎(宰) : 집안에 문신하는 도구를 둔 자다. 집안에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권한을 장악하는 것을 나타낸다. 남을 처벌하는 판이 높지는 않겠지만 그 권위를 인정받아 宰相이라는 어휘까지 생성되었다.

𠄎(妾) : 여자의 머리 위를 문신한 모양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을 칭했다. 그러나 점차 귀한 왕의 며느리 같이 여인으로 쓰였다.⁵⁰⁾

僕(僕) : 잡일을 맡는 사람의 머리에 문신을 하는 모양이다. 원래 범죄자들이 하였으나 점차 궁핍한 자의 작업이 되었다.

48) 王宇信 〈商代的刑罰與監獄〉, 《甲骨學一百年》, 487쪽

49)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戰爭與刑法〉, 臺灣商務印書館 1988, 416쪽

50) 寅卜 : 子商妾…媿。(《合》14036正)

貞 : 王夢妾有…有冊唯田。(《英》1616正)

6) 刺眼(눈을 찌르는 형벌)

포로나 노예들은 모진 고생 속에서 호시탐탐 도망의 기회를 엿보았음을 반영해 주는 글자가 있다. 눈을 손상시키는 형벌인 臧자가 그것이다. 臧은 부릅 뜬 눈이 戈에 찔려 실명되는 모양이다. 한쪽 눈만 가지고 도망갔을 때 두 눈으로의 감시를 벗어나기 힘들고 투쟁력은 저하되지만 생산력에는 큰 지장이 없어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것은 고대에 노예에게 자행되던 형벌 수단이었다. 순종적인 노예는 주인에게는 더없는 미덕으로 보여 후대에는 '신하'와 '선량하다'는 의미를 지녔다.⁵¹⁾

[40] 有災，其唯辛臧。(《合》 12836 反)
재앙이 있을까요?辛일에 臧刑이 있을까요?

눈을 상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글자들을 보면 당시 노예나 죄인들을 다루는데 눈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𠄎(民) : 침으로 눈을 찌르는 형상이다. 民은 노예나 범죄자에게 행했던 형벌이어서 범죄라는 의미가 있으나 점차 일반 백성을 지칭한다.

3. 徒刑

徒刑은 사람의 신체를 유린하는 형벌이다. 죄인을 구인하여 노역을 시키는 데는 대부분 徒刑이 처해졌다. 갑골문에는 새끼줄로 결박해 끌고 오는 형상이나 수갑을 채우고, 수갑을 찬 채 감옥에 감금하는 형상이 표현되어 있다.

1) 수갑채움

(1) 손에 채운 수갑

갑골문 중 수갑을 채운 형상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執자로 풀이하는 𠄎는 꿰어얹은 사람의 손을 형틀에 꿰고 있는 모양이다. 수갑과 관계된 갑골문

51) 徐中舒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90，321쪽

자형은 耑·耑·耑·耑·耑·耑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하게 수갑만 채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손으로 가해하고 또 수갑 찬 사람을 감옥에 넣으며 손에 매를 들고 가해하는 등 여러 가지 형체를 보여주고 있다. 글자의 모양을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鉞(執) : 사람이 꿰어얹아 양손을 형틀에 꿰고 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 묶는 모양으로 '잡는다'고 하였다.

[41] 壬戌卜, 伏貞 : 惟馬亞呼執。(《合》 28011)

壬戌일에 점을 치고 伏가 묻습니다. 마야에게 잡으라고 명할까요?

紮(繫) : 이는 執字에 새끼줄이 걸려있는 모양으로 새끼줄에 묶어 포로를 잡아오는 모양이다.

[42] 己巳卜, 貞 : 王逆繫, 有若。(《合》 32185)

己巳일에 묻습니다 : 대왕은 포로들을 받아들이는데 순조로울까요?

鞴(拳) : 형틀에 죄인의 두 손을 묶은 모양으로 양손을 가슴 쪽에 두고 수갑을 찬 형상이다. (도 6) 52, (도 7)



(도 6) 유물로 본 拳



(도 7) 《合》 5914

[43] 貞 : 呼婦好拳…。(《合》 175)

婦好에게 죄인을 묶으라고 명할까요.

(2) 발에 채운 수갑

桎자는 발에 족쇄를 채운 耑 모양이다. 《說文》에서 桎는 從木至聲이지만 갑골문에서는 止(足)을 따랐다. 《周禮·掌囚》에 「上罪拳而桎, 中罪桎梏,

「下罪梏」라고 한 것을 보면 중죄인에게는 감옥내에서도 梏처럼 발고랑인 족쇄를 채웠음을 알 수 있다.

[44] 甲戌卜, 貞 : 桎自川圍.(《庫》267)

川 이라고 하는 곳의 감옥에서 발에 수갑을 채울까요?

2) 포박과 구인

商代에 최대 적대 방국은 羌方이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 왕이 羌方은 수령을 영접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羌人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리고 제사의 희생물로 삼았다. 많은 羌자의 자형을 보면 羌人들을 잡아 올 때의 갖가지 방법들이 자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𠄎 𠄎 𠄎 𠄎 𠄎 𠄎

이 같은 다양한 자형은 모두 羌의 이체자들이지만 당시의 참상을 말해준다. 손으로 羌人을 끌고 오는 모양, 도구를 이용해 끌고 오는 모양 𠄎,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모양 𠄎, 목을 묶인 채 끌고 오는 모양 𠄎, 발에 사슬을 묶은 채 끌고 오는 모양 𠄎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갑골문에는 사람을 끌고 오는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다.

44. 桎 (孚)

갑골문 孚지는 손으로 아이를 끌고 오는 모양이다. 전쟁 후 포로를 잡아올 때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음으로 결박하지 않고 손으로 데려옴을 뜻한 자형이다.⁵³⁾

53. 𠄎 (妥)

여인을 끌고 음에 있어서도 남성처럼 결박하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고 끌고

53) 徐中舒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90，265쪽

와도 된다는 뜻에서 타당할 뜻자가 되었다.⁵⁴⁾

3) 拘禁(감옥에 가둠)

갑골문 중 전쟁 중에 사로잡은 죄인이나 도망가던 노예를 잡으면 감옥에 가 두는데 감옥은 圜로 나타냈다. 죄인을 잡아 가옥에 가둔 모양을 그린 자형은 圜이다.

圜(圜) : 감옥은 죄인을 가둘 수 있게 형구가 설치되어 있는 감옥에 죄인을 가둔 모양이다.

[45] 壬辰卜, 貞 : 執于圜。(《合集》 5973)

壬辰일에 점치고 묻습니다 : 감옥에 가들까요?

[46] …六圜。(《合集》 22333)

六지방의 감옥

[47] 辛卯卜, 王貞 : 小臣口, 其作圜于東對。

王固曰 : 大吉。(《龜》2.25. 10)

辛卯일에 점을 치고 왕이 묻습니다 : 小臣口이 東對에 감옥을 건축하는데 순조로울까요? 왕이 점친 결과를 보고 말했다 : 크게 길하다.

왕은 東對라는 곳에 감옥의 건축을 계획하고 大吉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帝辛시대의 복사로 감옥을 만들고 '大吉'이라는 말은 商末의 정국 상황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⁵⁵⁾

聽(聽) : 죄수를 옥에 가두고 죄의 진상을 듣는 모양이다. 于省呑는 聽으로 풀이하고 있다.⁵⁶⁾ 聽은 '讒獄'으로 옥사의 일을 논의하는 일이다.⁵⁷⁾

[48] 貞 : 王聽不佳。貞 : 王聽佳。(《戠》 45.10)

왕이 옥사를 듣지 말까요. 왕이 옥사를 들을까요?

54) 趙誠 《甲骨文簡明詞典》，中華書局，1986，48쪽

55) 齊文心 〈殷代的奴隸監獄與奴隸暴動〉，《甲骨文獻集成》，25冊，365쪽

56) 于省吾 〈釋聽〉，《甲骨文字釋林》，83쪽

57) 《尚書·大傳》：「諸侯不同聽」註曰：「讒獄也。」라고 하였다.

𠄎(報) : 甲骨文 報字는 감옥에서 죄목이 상정된 후 죄가 인정되어 罪人으로 확정되는 모양이다.⁵⁸⁾ 《說文》에 「報, 當罪人也, 從牽從反, 反服罪也。」라 하고 《漢書·凡言訊鞠論報》에서는 報를 「處分其罪以上聞也」라고 하였다.

[49] 甲申, 貞 : 其報于父丁。(《南明》 621)

甲申일에 묻습니다 : 父丁에게 죄를 알릴까요?

4) 신체유린

갑골문 𠄎자는 𠄎로 풀이하는 字인데 이 字를 구성하는 형체는 사람의 신체를 유린하는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 가운데 들어간 𠄎 또는 𠄎는 大와 勺가 상하로 포개진 모양으로 포복한 사람 위에 바로 선 사람이 올라 밟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숲 속에서 이루어져 林이 추가되어 𠄎을 이루었다.

[50] 貞 : 令往𠄎。(《合》 5426)

묻습니다 : 가서 사람을 밟으라고 명할까요?

이 같은 자형은 노예들을 짓밟거나 등위에 올라앉던 지배층의 인체 유린의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⁹⁾ 점차 억울함이 마음속에 정체되어 '억울하다'는 뜻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⁰⁾ 金文에서야 𠄎가 첨가되었다. 그 외에도 갑골문 𠄎자는 갑골문 𠄎자를 따랐는데 이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위에 앉아 있는 모양인 𠄎이다.⁶¹⁾

VI. 形罰의 執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商代에는 인명을 빼앗는 사형에서부터, 손발을 자르는 등 신체를 훼손시키는 형벌 및 인체를 유린하는 갖가지 크고 작은 형벌이 있었

58) 嚴一萍 〈殷商刑法去〉, 《中國文字》, 新五期, 1981, 69쪽

59) 胡厚宣 〈殷代的刑罰〉, 《考古》, 1973, 109쪽

60) 于省吾 〈釋𠄎〉, 《甲骨文字釋林》, 306쪽

61) 于省吾 〈釋𠄎〉, 《甲骨文字釋林》, 251쪽

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벌이 실제로 商代사회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인종의 형벌 명칭으로만 존재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갑골복사는 商代의 제왕들이 다가올 미래의 일이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제반 문제들을 神에게 묻고 그 응답을 통해 행동으로 옮겼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卜辭의 구조가 前辭·命辭·占辭·驗辭로 이어지는 기록 상황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前辭는 짐치는 날짜의 기록이고, 命辭는 짐치는 내용이며, 占辭는 점복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내용이다. 占辭의 결과가 잘 맞았는지는 마지막 단계인 驗辭에서 그 실현 여부를 알 수 있다.

卜辭중에는 命辭에서 형벌의 실행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앞서 들었던 예문들은 거의가 형의 집행을 묻는 卜辭이다. 占卜의 경우는 대부분 사건의 진행을 앞두고 점을 쳐 묻고 있다. 제사 복사의 경우를 보면 더욱 여실히 알 수 있다. 정해진 제사의 행사를 위해 점을 친다거나 제사를 앞두고 제수품의 종류나 수량을 점친 경우가 많다.

- [31] 爭貞：刑往，不死。(《合》 861)
도망간 죄인을 잡아와 刑을 가하면 죽지 않을까요?
- [33] 庚辰卜，王：朕則(剝)羌，不死。(《合》 525)
왕이 묻습니다：왕인 내가 羌人에게 宮刑을 내리면 죽지 않을까요.
- [35] 貞：呼鼻，不若。(《合》 5995正)
문습니다：剝刑을 명하는데 순조롭지 않을까요?
- [22] 口自…[王]固曰：其有來媿…口圉羌戎。
(上海博物館 所藏，骨 反)
- [23] □□卜，覈貞：匍亡禍。(北京大學 所藏 正)
[王固曰]：有崇，…□圉羌戎，罔圉一人。(反)
覈가 묻습니다：열흘 동안 재앙이 없습니까? 왕이 점친 결과를 보고 길흉을 판단해 말했다：재앙이 있겠다. 羌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한 사람을 罔刑에 처했다.

[31]의 경우 도망간 죄인을 잡아와 刑을 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친 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33]의 경우 왕이 친히 剝刑을 지휘했다. 羌人에게 剝刑을 가해 내관을 삼으려 했으리라고 추측하는데⁶²⁾

그럴 경우 형의 집행은 더욱 분명한 일이다. [35]의 경우 코를 베는 형을 내리려는데 행여 불상사는 없을지 우려하는 심정으로 점을 쳤으리라고 사료된다. [22], [23]의 예는 형 집행을 결과를 적은 驗辭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벌의 처단이 이루어졌음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VII. 結論

이상과 같이 商代 갑골복사에 나타난 刑罰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商代는 成湯시 강한 刑法이 제정되었고 盤庚에 의해 엄하게 쓰였으며 祖甲에 와서 다시 한 차례 정비되었으며 帝辛 시기에 잔혹한 법률이 더욱 추가되는 지속되는 立法 현상을 엿볼 수 있다. 商代는 中國 刑法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刑名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대는 5천년 중국 역사상 가장 미신을 숭상했던 시대를 대변하듯 神權은 王權에 결합되어 上帝·自然神·祖上神 심지어는 大臣神 들까지도 王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쳤고 商王들은 諸神들의 힘을 빌어 斷罪하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의 기록에는 商代의 刑法이 三百조항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不從誓言', '顛越不恭', '不孝之行', '臣下不匡', '棄灰于公道' 등 6항목뿐이다.

商代의 法律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死刑이다. 목숨을 앗아가는 死刑에는 伐刑(大劈)·火刑(炮烙)·凌遲(磔刑)·生埋葬·水沒·醢刑 등이 있다.

둘째는 肉刑(體刑)이다. 다리·손·코·귀 또는 남성의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얼굴에 문신을 하는 형벌이다. 刖刑·宮刑·劓刑·刵刑·墨刑·刺眼 등이 있다.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되는 형벌이지만 목숨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徒刑이다. 사람의 신체를 유린하는 형벌이다. 손에 수갑을 채우는 執, 발에 수갑을 채우는 桎, 목에 새끼줄을 감고 끌고 오는 繫, 두 손을 앞으로 하여 수갑에 채우는 拳, 감옥에 가두는 구금인 圜, 죄인을 감옥에 가두고

62) 裘錫圭〈甲骨文所見的商代五刑〉, 《古文字論集》, 212쪽

죄의 진상을 논하는 聽, 죄인의 죄목이 보고 된 후 죄인으로 확정하는 報 등이 있다. 또한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밟거나 절구공이로 찌는 등 참혹한 유린을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잔인한 형과 집행은 수많은 주변 방국과 불복 이족들을 정벌하여야 하였던 商代의 정치적 현실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전쟁의 포로를 잡아와 순용시켜야했고 폭동을 진압하고 도망가는 포로와 노예로 부려지는 죄인들을 다스리는데 엄한 법률은 그들을 다스리는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郭沫若 主編 《甲骨文合集》，中華書局，1980
 姚孝遂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中華書局，1988
 顧士熙 主編 《甲骨文合集補》，語文出版社，1999
 李孝定 《甲骨文字集釋》，歷史語言研究所，1965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1981
 于省吾 《甲骨文字釋林》，臺灣大通書局，1981
 趙 誠 《甲骨文簡明詞典》，中華書局，1986
 孟世凱 《甲骨學小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7
 徐中舒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1990
 張玉金 《甲骨文虛詞詞典》，中華書局，1994
 于省吾 《甲骨文字詁林》，中華書局，1996
 谷衍奎 《漢字源流字典》，華夏出版社，2003
 裘錫圭 《古文字論集》，1992年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臺灣大通書局，1945
 —— 《殷代的刑罰》，1973年
 —— 《甲骨文所見殷代奴隸的反壓迫鬥爭》，《考古學報》，第1期，1976年
 彭邦炯 《商史探微》，重慶人民出版社，1988年
 楊升南 《商代的法律》，《甲骨文獻集成》 제2집，2001
 —— 《商代的法律制度》，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年
 宋鎮豪 主編 《甲骨文獻集成》，2001
 —— 《夏商法律制度研究》，中華書局，1996

- 〈甲骨文中所見商代的墨刑及有關方面的考察〉, 1998
- 姚孝遂 〈商代的俘虜〉《古文學研究》 제1집, 1979
- 嚴一萍 《甲骨學》, 藝文印書館, 1967
- 〈殷商刑法志〉《新中國文字》 제5기 1981
- 郭旭東 〈商代刑法問題述論〉《甲骨學研究》 제1집, 1987
-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臺灣商務印書館, 1988
- 吳浩坤·潘悠, 梁東淑 譯, 《中國甲骨學史》, 東文選, 2002
-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科學出版社, 1956
- 董作賓 《甲骨學六十年》, 藝文印書館, 1965
- 孟世凱 《殷墟甲骨文簡述》, 文物出版社, 1980
-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1982
- 姚孝遂·肖丁, 《小屯南地甲骨考釋》, 中華書局, 1985
- 陳煒湛 《甲骨文簡論》,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張秉權 《甲骨文與甲骨學》, 臺灣國立編譯館, 1988
- 王宇信 《甲骨學通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 《甲骨學一百年》,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9
- 齊文心 〈殷代的奴隸監獄和奴隸暴動〉, 《甲骨文獻集成》, 2001, 제 25冊

【中文提要】

奴隸時代的商代奠定了中國刑法的基礎。經過五百多年的商代歷史過程中鞏固了刑法的種類, 刑法的名稱。商初成湯時制定了很嚴厲的刑法。盤庚時代加強了更嚴的法度, 到祖甲時重建湯法, 到了商代最後的帝辛時代增加了炮烙之類最慘酷的法律。商代法律的特徵是神權結合於王權的, 上帝、自然神、祖上神, 甚至於大臣神也支配於五權。商代刑法的內容大略分三類。

第一死刑, 死刑是殺人的刑法。有伐刑, 火刑(炮烙), 凌遲, 活埋, 水沒, 醢刑等機種。 第二肉刑, 肉刑是切斷或傷害身體的一部分。有剕刑、官刑、劓刑、刖刑、墨刑、刺眼等機種。 第三徒刑, 是蹂躪人身的刑法, 種類繁多, 執、桎、圜、聽、報等, 都般都是戰勝後帶來俘虜時, 或給奴隸處置的刑法。

奴隸社會的商代,四方圍着大小敵國,不服異族,征伐或是被征服的環境裏惹起了如此殘忍的刑法。嚴勵的刑法是奴隸主貴族的保持王權的一種工具了。這一切都表出商代是慘烈奴隸社會,以各種刑法來掌握住人民,奴隸的。

【主題語】

甲骨文,商代,湯刑,刑罰,刑法,法律,法度,死刑,肉刑,徒刑,墨刑,劓刑,宮刑,劓刑,刖刑,刺眼,炮烙之刑